

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제도 개선 사항

□ 주요 내용

-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
 - 50만 → 60만원 / 다태아 90만 → 100만원 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
- 사용 기간 연장
 - 분만예정일(출산일·유산진단일)부터 60일 → 1년
- 사용 범위 확대
 - 임신부의 임신·출산 진료비,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에도 사용

□ 유의사항

- 시행일(2019.1.1.) 이후 임신·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
 - 시행일 전 신청하고 시행일 이후 변경 신고 시 인상 금액 적용되지 않음
 - 시행일 전 신청하여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 사용 가능
- 사용범위 확대로 지정요양기관 폐지
 - 임신부 : 요양기관(약국 제외)에서 임신·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로만 사용
 - 1세 미만 영유아 : 모든 요양기관(약국 포함)에서 사용 가능

※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용

□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

- 진료비 수납 시 단말기의 할부 개월란에 '지원금 승인코드(38)'를 입력
- 5만원 미만 소액 결제 시 단말기의 할부 개월란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할 수 있음(단말기 회사에 문의)
- 진료 당일 국민행복카드 미지참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바우처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지원 종료일 전이라면 재결제 가능, 카드 사용시작일 이전의 진료분은 결제 불가